

■ 건축법 시행규칙 [별지 제27호의11서식] <신설 2016. 7. 20.>

세움터(www.eais.go.kr)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결합건축협정서

• 백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(총4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 50일
------	------	------	-------------

I. 결합건축 개요

위 치	가		
	나		
대지간 최단거리			
용도지역(지구/구역)			
결합 건 축 협정 체결자	성명	주소	생년월일
	가		(법인, 외국인 등 의 경우 등록번호)
	나		(법인, 외국인 등 의 경우 등록번호)
결합 건 축 내 용		가 대지	나 대지
	법정 용적률		
	결합건축으로 조정되는 용적률		
	건축가능 용적률		
	최종 용적률		
유 효 기 간	(최소 30년 이상)		
위반 시 제재 사항	(결합건축 체결 후 동시재건축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 제재에 대한 대응사항 등)		
기 타			

「건축법」 제77조의1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12에 따라 위와 같이 체결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제출합니다.

체결자 (가)

(서명 또는 인)

체결자 (나)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귀하

처 리 절 차



신청인

처 리 기 관 (특별시 · 광역시 · 특별자치시 · 특별자치도, 시 · 군 · 구)

210mm × 297mm 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II. 결합건축 현황도

	대지면적(m^2)	건축면적(m^2)	건폐율(%)	연면적 합계(m^2)	연면적합계(m^2) (용적률 산정용)	용적률(%)
가 대지						
나 대지						

도면의 종류	축 척 1 :	작성자	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배치도[대지의 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, 건축선(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]
-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.

III.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

가 대지

주소	특이사항
----	------

도면의 종류	축 척 1 :	작성자 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배지도[대지의 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, 건축선(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]
-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.

나 대지

주소	특이사항
----	------

도면의 종류	축 척 1 :	작성자 (서명 또는 인)
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

- 배치도[대지의 경계, 대지의 조경면적, 「건축법」 제43조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, 건축선(「건축법」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선이 정해지는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면적 및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, 건축물의 배치현황,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,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합니다]
-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면적, 조경면적, 건축선 후퇴면적의 외곽선은 굵은 점선으로 표시하고, 지시선을 이용하여 면적(건축선 후퇴면적의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거리를 포함합니다)과 시설물을 문자로 표기해야 합니다.